CASE 6

자동 센터 펀치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7332 (2026.01.14.)
- **쟁 점 사 항**: 제301조 및 IEEPA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중국
- **최종 원산지**: 중국

Ⅱ 사실관계

용도	• 목재나 금속 표면에 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수동 공구로서 내부 스프링에 의해 힘을 전달		
재료		베트남	• 펀치 핀
		중국	• 쉘 바디, 헤드, 캡 • 이젝터 스프링 • 캡 스프링 • 가이드 부싱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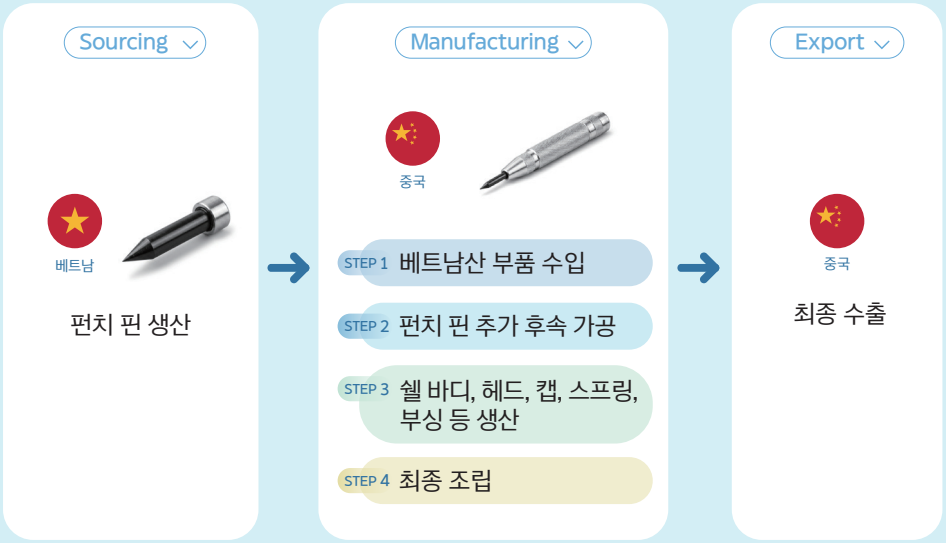		
상세 공정		베트남	• 원강을 냉간 단조하여 펀치 핀 생산
		중국	• 베트남에서 펀치 핀 수입 • 펀치 핀에 추가적인 열처리 및 전기도금 공정 수행 • 쉘 바디, 쉘 헤드, 쉘 캡, 이젝터 스프링, 가이드 부싱 및 캡 스프링 생산 • 펀치 핀과 기타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Ⅲ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펀치 핀이 완성된 자동 센터 펀치에 전용되도록 이미 베트남에서 제조되었고 중국에서의 공정을 거친 후에도 해당 형태를 유지하므로 베트남이 원산지라고 주장

《CBP의 판정》

- 베트남에서 제조된 펀치 핀이 특정 용도로 설계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실질적 변형의 판정은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자동 센터 펀치는 내부 스프링식 충격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며, 이 메커니즘이 망치가 없어도 힘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능을 제공함
- 충격 매커니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들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최종 조립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제301조 및 IEEPA 적용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Ⅳ 시사점

- 수공구의 원산지는 해당 제품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 혹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핵심 요소 등을 기반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음

망치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망치
사례번호	NY N348537 (2025.05.09.)
쟁점사항	제301조 및 기타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베트남 - 강철봉 및 강판을 가공하여 망치 머리 블랭크 생산 • 중국 - 강철 손잡이 용접, 플라스틱 사출 성형 코팅 등 수행
판절 결과	•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망치 머리에 의해 부여되며, 베트남에서의 공정을 통해 이미 최종 형태로 제작되었으므로 베트남이 원산지임

다기능 공구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사례번호	HQ H305966 (2020.04.16.)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대만 - 중국산 샤프트 및 칼라 수입 - 두 가지 형태의 교체 가능한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 제조 - 중국산 부품 및 대만산 부품을 최종 조립
판절 결과	• 최종 제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및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 • 샤프트는 중국에서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제조되었으며, 대만에서의 조립은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